

대법원 2024도4098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인 피고인이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에 따른 외국인전문가로 선정되어 해당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중국에 소재한 중경이공대와 고용 계약을 체결한 뒤 공동 연구과정에서 산업기술을 유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비용을 지급하게 하고, 교직원 해외파견 및 겸직근무 승인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 4098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사건의 개관

- 피고인 ⇒ 1997. 2.경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의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로 근무, 2017. 2.경부터 중경양강카이스트 국제프로그램(이하 '국제프로그램')의 공동학장이자 책임교수로 근무, 2017. 5. 5.경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¹⁾의 외국인전문가로 선정
- 피고인은 2017. 11.경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천인계획에 따른 '라이다'²⁾ 관

1) 2008년경부터 중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 해외고급인재 유치계획(The Recruitment Program for Foreign Experts)

2) 레이저 빔을 사용하여 대상 물체로부터 반사되는 신호를 받아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

련 기술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천인계획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중경이공대 교수 및 연구원들로 하여금 한국과학기술원 보유 연구자료를 관련 기술 연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로 연구실을 구성하고, 중경이공대 교수 및 연구원 30여 명에게 한국과학기술원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만이 접속권한을 가진 기술연구자료 공유 시스템인 원드라이브(Onedrive) 클라우드의 접속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 보유 연구자료를 공유함

나. 공소사실의 요지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20. 2. 14.경까지, 한국과학기술원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이 첨단기술 중 '차량용 레이저 레이다 기술' 등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기술인 보안보장 광통신 기술, 상보잡음을 이용한 무간섭 라이다 관련 기술 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 한국과학기술원 보유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 자산인 연구자료 등을 한국과학기술원 소속 연구원들로 하여금 중경이공대 소속 교수 및 중국 연구원 30여 명이 수시로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한 원드라이브(Onedrive)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게 하여 이를 유출·누설함

■ 업무상배임

-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국제프로그램의 공동학장 및 책임교수이자 중경이공대-카이스트 교육협력센터(이하 '교육협력센터')의 부서장으로 서, 교육협력센터에 배정된 교육협력센터 운영비에서 ① 교육협력센터 운영과 관련 없는 연구를 하고 있던 연구원들에 대한 수탁연구조사비, ② 이전부터 미납하고 있던 특허수수료와 천인계획의 과제로서 발표한

하는 기술 ⇒ 이 사건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로 사용됨

논문게재수수료, ③ 천인계획에 따른 피고인 개인 연구 과제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구입비, ④ 천인계획 관련 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연수연구원 2명의 임금으로 지급되게 함

▣ 사기

-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연구원 A가 교육연구 혁신지원 또는 국제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하게 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피해자 한국과학기술원에 임금 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에게 임금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함

▣ 업무방해

- 피고인은 라이다 관련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사전판정될 경우에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위원회에서 천인계획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승인을 해주지 않고, 해외파견·겸직근무도 허용되지 않아 천인계획에 따른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함
- 피고인은 해외파견·겸직근무 신청 이전에 '라이다 연구'가 아닌 'LiFi³⁾ 연구'로 연구과제를 변경한 것처럼 국가핵심기술 사전판정을 허위로 신청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 해외파견·겸직근무 신청 시에도 마치 천인계획에 따른 연구과제 수행이 국제프로그램 업무에 해당하고, 연구과제도 '라이다' 연구는 하지 않고 'LiFi 연구'만 하는 것처럼 허위신청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한국과학기술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의 해외파견·겸직근무 심의업무와 피해자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의 교직원 해외파견 및 겸직근무 승인업무를 각 방해함

2. 소송경과

▣ 제1심

- 사기 및 업무방해 부분 무죄
- 나머지 유죄(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3) 실내 무선광(Light Fidelity)

■ 원심

- 전부 유죄(징역 2년)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 피고인이 중국 연구원들에게 공유한 연구 자료들이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산업기술' 및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의 유출, 누설에 대한 고의 및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의 인정 여부
- 피고인이 교육협력센터의 예산을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특정 연구원을 고용한 행위가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천인계획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파견·겸직근무를 신청한 행위가 한국과학기술원 교직원의 해외파견 및 겸직근무 승인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첨단기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의 각 고의 및 목적,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